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 -74
----------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일

발 의 자 : 이충현, 황영호, 송영섭, 김성한,
이종숙, 송순호, 황동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용자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여력 조회결과 진행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 추천에 불과하여 용자대상자 선정 등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지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은행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5조4항 및 제8조)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금융기관” → “은행”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은행법」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11. 2. ~ 11. 7.)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용자대상자의 선정”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용자액의 결정”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한다.

제8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에 따른 <u>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u>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④ ----- ----- ----- -- <u>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u> ----- -----.</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1. <u>용자대상자의 선정</u> 2. <u>용자액의 결정</u> 3. (생략)</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u> 2.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3.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u>금융기관</u>에 위탁한 경우 수탁<u>금융기관</u>으로 하여금 매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p>	<p>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 ----- <u>은행</u> ----- ----- <u>은행</u> ----- ----- ----- ----- ----- .</p>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